

#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8
----------	-------

발의연월일 : 2018. 11. 12.

발의자 : 강석호 · 주호영 · 정유섭  
황영철 · 이학재 · 안상수  
임이자 · 정갑윤 · 엄용수  
문진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총 생산가치는 연간 최소 2.5조 달러에 이르며 세계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이면 3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이에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체험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임원으로는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11조).
- 라.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보조금·기부금·차입금 및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체험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과학교육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과학교육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과학교육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과학교육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과학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교육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교육
3. 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4. 학교 교원의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5. 해양과학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6. 해양과학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8. 해양과학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9. 과학교육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의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1. 그 밖에 해양과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9호의 수의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과학교육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과학교육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과학교육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교육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끊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학교육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과학교육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과학교육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과학교육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과학교육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재원) ① 과학교육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과학교육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교육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교육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과학교육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차입금) 과학교육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후원회) ① 과학교육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과학교육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교육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과학교육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과학교육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교육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과학교육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과학교육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과학교육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교육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학교육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학교육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과학교육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과학교육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제23조(준용) 과학교육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교육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별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과학교육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교육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과학교육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과학교육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과학교육관이 설립될 때까지 과학교육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교육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과학교육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과학교육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교육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과학교육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과학교육관은 설립 당시 과학교육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과학교육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과학교육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교육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과학교육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